조선총독부관보(朝鮮總督府官報) 969호(號) 1930년(昭和 5) 3월 29일 토요일

○ 고 시(告示)

조선총독부고시(朝鮮總督府告示) 제138호(號)

조선총독부철도, 사설철도, 궤도 및 항로 간 여객 및 수·소하물 연대운송규칙[朝鮮總督府鐵道·私設鐵道·軌道竝航路間旅客及手·小荷物連帶運送規則]을 1930(昭和 5)년 4월 1일부터 아래[左]과 같이 정(定)함.

1928(昭和 3)년 조선총독부고시(朝鮮總督府告示) 제151호(號)(조선총독부철도, 사설철도 및 항로 간 여객 및 수·소하물 연대운송규칙[朝鮮總督府鐵道, 私設鐵道竝航路間旅客及手·小荷物連帶運送規則])는 본칙(本則) 시행(施行)과 동시(同時)에 이것을 폐지(廢止)함.

1930(昭和 5)년 3월 29일 조선총독(朝鮮總督) 자작(子爵) 사이토 마코토(齋藤實)

조선총독부철도, 사설철도, 궤도 및 항로 간 여객 및 수·소화물 연대운송규칙[朝鮮總督府鐵道·私設鐵道·軌道竝航路間旅客及手·小荷物連帶運送規則]

제1장(章) 총 칙(總則)

제1조(條) 조선총독부철도(朝鮮總督府鐵道), 사설철도(私設鐵道), 궤도(軌道) 또는 항로(航路)와 여객(旅客), 수하물(手荷物), 소하물(小荷物) 및 여객(旅客) 부수(附隨) 소하물(小荷物)의 연대운송(連帶運送)을 하는 경우(境遇)에 있어서는 본(本) 규칙(規則)에 의(依)함.

전항(前項)에 의(依)한 연대운송(連帶運送)의 범위(範圍)는 별도(別途)로 이것을 정(定)함.

제2조(條) 본(本) 규칙(規則)에는 아래[左]의 약어(略語)를 사용(使用)함.

1. 여객규칙(旅客規則)이란 조선국유철도 여객 및 하물 운송규칙[朝鮮國有鐵道旅客及荷物運送規則]을 말함.
2. 연대운송(連帶運送)의 범위(範圍)란 연대운수(連帶運輸)를 하는 철도(鐵道), 궤도(軌道) 및 항로(航路)를 연(連)하는 연대운송(連帶運送)의 범위(範圍)를 말함.
3. 철도(鐵道)란 철도(鐵道) 및 궤도(軌道)를 말함.
4. 국(局)이란 조선총독부 철도국(朝鮮總督府鐵道局)을 말함.
5. 승차권(乘車券)이란 승차권(乘車券) 및 승차선권(乘車船券)을 말함.

제3조(條) 연대운송(連帶運送)에 관계된 수하물(手荷物), 소하물(小荷物) 및 여객부수소하물(旅客附隨小荷物)에 관(關)한 손해(損害) 및 연착(延著)에 대(對)하여는 관계운수기관(關係運輸機關)은 연대(連帶)하여 그 배상(賠償)의 책임(責任)을 짐. 이 경우 배상(賠償)의 한도(限度)는 그 원인(原因)을 야기(惹起)한 장소가 속(屬)한 운수기관(運輸機關)에 대(對)하여 법령(法令) 또는 계약(契約) 상(上) 정(定)해진 바에 의(依)함. 단(但) 손해(損害)의 원인(原因)이 경합(競合)하거나 또는 그 원인(原因)을 야기(惹起)한 장소(場所)가 명확(明確)하지

아니한 경우(境遇)에 있어서는 그 액(額)의 큰 것을 한도(限度)로 함.

연착(延著)으로 인(因)한 손해(損害)에 대하여 운수기관(運輸機關)이 배상(賠償)의 책임(責任)을 지는 경우에 있어서 지불(支拂)의 한도(限度) 및 기본(基本)이 될 금액(金額)은 전(全) 운송구간(運送區間)의 운임(運賃) 및 배달료(配達料)를 합산(合算)한 액(額)으로 함.

제4조(條) 각(各) 운수기관(運輸機關)에 있어서 운송(運送)에 관(關)한 제(諸) 규칙(規則)은 본(本) 규칙(規則)에 저촉(抵觸)되지 아니하는 한(限) 연대운송(連帶運送)에 대(對)하여 각(各) 그 소관(所管) 내(內)의 운송(運送) 때마다 효력(效力)이 유(有)함.

제5조(條) 운임(運賃) 및 요금(料金)을 계산(計算)하는 경우(境遇)에 있어서 철도(鐵道), 항로(航路)의 영업(營業) 킬로미터 수(粁程: km數)에 1킬로미터(粁: km) 미만(未滿)의 단수(端數)가 유(有)할 때는 소관(所管)을 달리하는 철도(鐵道), 항로(航路)마다 그 단수(段數)를 1킬로미터(粁: km)로 절상(切上)함.

제6조(條) 운임(運賃) 및 요금(料金)의 수입(收入) 및 환급(還給)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 발생(發生)한 1전(錢) 미만(未滿)의 단수(端數)는 소관(所管)을 달리하는 철도(鐵道) 및 항로(航路)마다 그 정(定)한 바에 의(依)하여 이것을 절사(切捨)함. 단(但) 아래[左]에 게시(揭示)한 경우(境遇)에서는 특별(特別)히 정(定)한 것을 제(除)하고 그 총액(總額)에서 이것을 절사(切捨)함.

1. 소관(所管)을 달리하는 철도(鐵道) 및 항로(航路)의 영업(營業) 킬로미터 수(粁程: km數)를 통산(通算)하여 운임(運賃)을 계산(計算)하는 경우(境遇)
2. 제11조(條)제2항(項) 및 제12조(條)제1호(號)에 의(依)하여 소관(所管)을 달리하는 철도(鐵道), 항로(航路) 운임(運賃)의 병산액(併算額)에 의(依)하여 운임(運賃)을 계산(計算)하는 경우(境遇)

제2장(章) 여객운송(旅客運送)

제7조(條) 승차권(乘車券)은 편도승차권(片道乘車券), 왕복승차권(往復乘車券) 및 단체승차권(團體乘車券)의 3종(種)으로 함.

제8조(條) 승차권(乘車券)의 통용기간(通用期間)은 아래[左]에 게시(揭示)한 것 및 특별(特別)히 정(定)한 것을 제(除)하고 철도(鐵道), 항로(航路)의 영업(營業) 킬로미터 수(粁程: km數)를 통산(通算)하여 여객규칙(旅客規則) 제5조(條)의 규정(規定)에 의(依)하여 이것을 산정(算定)함.

1. 웅기(雄基)·청진(淸津) 간(間)의 항로(航路)에 의(依)한 것에 있어서는 철도구간 여객규칙(鐵道區間旅客規則) 제5조(條)의 규정(規定)에 의(依)하여 산출(算出)한 일수(日數)에 1일(日)을 추가(追加)함.
2. 인천(仁川)·지부(芝罘) 간(間), 인천·다롄(大連) 간(間)의 항로(航路)에 의(依)한 것에 있어서는 철도구간 여객규칙(鐵道區間旅客規則) 제5조(條)의 규정(規定)에 의(依)하여 산

출(算出)한 일수(日數)에 4일(日)을 추가(追加)함.

3. 부산(釜山)·히타카쓰(比田勝) 간(間), 부산(釜山)·이즈하라(嚴原) 간(間), 부산(釜山)·하카타(博多) 간(間)의 항로(航路)에 의(依)한 것에 있어서는 철도구간 여객규칙(鐵道區間旅客規則) 제5조(條)의 규정(規定)에 의(依)하여 산출(算出)한 일수(日數)에 4일(日)을 추가(追加)함.

제9조(條) 여객(旅客)의 도중(道中) 하차(下車)에 대하여는 여객규칙(旅客規則) 제8조(條)의 규정(規定)에 의(依)함.

제10조(條) 여객운임(旅客運賃)은 소관(所管)을 달리하는 철도(鐵道) 및 항로(航路)의 소정액(所定額)을 병산(併算)한 것으로 함.

제11조(條) 소아(小兒)란 12세(歲) 미만(未滿)의 사람을 말함.

소아(小兒)에 대(對)한 운임(運賃)은 할인(割引)의 유무(有無)에 불구(不拘)하고 대인운임(大人運賃)의 반액(半額)으로 함. 4세(歲) 미만(未滿)의 소아(小兒)는 무임(無賃)으로 함.

제12조(條) 여객운임(旅客運賃)의 할인(割引)을 하는 경우(境遇)는 아래[左]의 각(各) 호(號)에 의(依)하여 운임(運賃)을 계산(計算)함.

1. 철도(鐵道) 및 항로(航路) 그 할인율(割引率)을 동일하게 할 때는 제10조(條)의 병산액(併算額)에서 할인(割引)을 함.

2. 철도(鐵道) 및 항로(航路) 중(中) 할인율(割引率)을 달리할 때는 그 할인율(割引率)을 달리하는 것마다 할인(割引)을 하여 이것을 병산(併算)함.

제13조(條) 여객규칙(旅客規則) 제47조(條)에서 제53조(條)까지 및 제62조(條)에서 제71조(條)까지의 규정(規定)에 의(依)한 특종할인(特種割引)에 대(對)하여는 철도(鐵道) 및 항로(航路)에서 국(局)과 동일(同一)의 취급(取扱)을 함. 단(但) 항로(航路)에 있어서 할인율(割引率)은 아래[左]와 같이 함.

1. 웅기(雄基)·청진(淸津) 간(間)에 있어서 여객규칙(旅客規則) 제47조(條) 및 제50조(條)의 할인율(割引率)은 각(各) 등(等) 2할(割)로 하고, 여객규칙(旅客規則) 제62조(條), 제65조(條) 및 제68조(條)의 할인율(割引率)은 보통등급[並等]에 한(限)하여 2할(割)로 함.

2. 인천(仁川)·지부(芝罘) 간(間), 인천·다롄(大連) 간(間)에 있어서 여객규칙(旅客規則) 제47조(條) 및 제50조(條)의 할인율(割引率)은 각(各) 등(等) 3할(割)로 하고, 여객규칙(旅客規則) 제62조(條), 제65조(條) 및 제68조(條)에서 규정(規定)한 여객(旅客)에 대하여는 할인을 하지 아니함.

3. 부산(釜山)·히타카쓰(比田勝) 간(間), 부산(釜山)·이즈하라(嚴原) 간(間), 부산(釜山)·하카타(博多) 간(間)에 있어서 여객규칙(旅客規則) 제47조(條) 및 제50조(條)의 할인율(割引率)은 2,3등(等) 2할(割)로 하고, 여객규칙(旅客規則) 제62조(條), 제65조(條) 및 제68조(條)에 규정(規定)한 여객(旅客)에 대하여는 할인(割引)을 하지 아니함.

제14조(條) 여객규칙(旅客規則) 제54조(條)에서 제61조(條)까지의 규정(規定)에 의(依)한 특종할인(特種割引)에 대하여는 각(各) 철도(鐵道)에서 국(局)과 동일(同一)의 취급(取扱)을 함.

전항(前項)의 경우(境遇)에서 여객규칙(旅客規則) 제58조(條)의 규정(規定)에 의(依)하여 수수(收受)해야 할 부족인원(不足人員)에 대(對)한 여객운임(旅客運賃)은 국(局)에서 정(定)한 임률(賃率)에 의(依)하여 이것을 산출(算出)함.

제15조(條) 공무(公務)로 여행(旅行)하는 육해군(陸海軍) 군인(軍人)·군속(軍屬) 및 경찰관리(警察官吏)와 죄수[囚徒] 및 감수관리(監守官吏)에 대(對)한 운임(運賃)의 할인(割引)은 아래[左]의 각(各) 호(號)에 의(依)함.

1. 각(各) 철도(鐵道)에서는 제10조(條)에 의(依)한 운임(運賃)에서 5할(割)을 저감(低減)함.

2. 항로(航路)에서는 육해군(陸海軍) 군인(軍人)·군속(軍屬)에 한(限)하여 2할(割)을 저감(低減)함. 단(但) 부산(釜山)·히타카쓰(比田勝) 간(間), 부산(釜山)·이즈하라(嚴原) 간(間), 부산(釜山)·하카타(博多) 간(間)에서는 경찰관(警察官)에 대(對)하여도 3할(割)을 저감(低減)함.

전항(前項)에 의(依)하여 운임(運賃)의 할인(割引)을 받는 사람은 공무여행(公務旅行)인 것의 증명서(證明書)를 제출(提出)함으로 함.

제16조(條) 왕복여객(往復旅客)에 대(對)한 운임(運賃)은 편도여객운임(片道旅客運賃)의 2배(倍)로 함. 단(但) 별단(別段)의 정(定)한 것은 이 한(限)에 부재(不在)함.

제17조(條) 객차대절운송(客車貸切運送)의 경우(境遇)에 있어서는 여객규칙(旅客規則) 제91조(條)에서 제93조(條)까지, 제95조(條)에서 제99조(條)까지의 규정(規定)에 의(依)함.

전항(前項)의 경우(境遇)에서 그 운송료(運送料)가 각(各) 철도(鐵道)를 통틀어 50킬로미터(粁: km)에 차지 아니할 때는 각(各) 철도(鐵道)의 운송(運送) 킬로미터 수(粁程: km數)에 의(依)하여 50킬로미터(粁: km)를 안분(按分: 킬로미터[粁: km] 이하[以下]의 단수[端數]는 발선[發線]에서 절상[切上]함)하고 그 킬로미터 수(粁程: km數)에 대(對)하여 운임(運賃)을 계산(計算)함.

제18조(條) 여객규칙(旅客規則) 제78조(條)에 의(依)한 단체여객(團體旅客)에 대하여는 국(局)과 동일(同一)의 취급(取扱)을 함. 단(但) 감독자(監督者) 무임승차(無賃乘車)·선(船) 인원(人員)에 대하여 특별히 정(定)한 것과 할인(割引) 최저인원(最低人員) 및 할인율(割引率)은 각각(各各) 그 정(定)한 바에 의(依)함.

제19조(條) 상급(上級)으로의 환승[乘換] 및 승차권(乘車券) 분실(紛失)의 신청(申請)이 있는 경우(境遇)의 취급방법(取扱方法)은 아래[左]와 같이 함.

1. 철도(鐵道) 상호(相互) 간(間)에 있어서는 여객규칙(旅客規則) 제108조(條)에서 제110

조(條)까지의 규정(規定)에 의(依)하여 이 취급(取扱)을 함.

2. 철도(鐵道)와 항로(航路) 간(間)에 있어서는 각자(各自)의 정(定)한 바에 의(依)하여 각각(各各) 별도(別途)로 이것을 취급(取扱)함.

제20조(條) 여객규칙(旅客規則) 제4조(條), 제6조(條), 제7조(條), 제9조(條), 제10조(條), 제13조(條), 제15조(條), 제17조(條), 제81조(條)에서 제86조(條)까지, 제101조(條)에서 제105조(條)까지, 제111조(條)에서 제115조(條)까지 및 제119조(條)의 규정(規定)은 연대운송(連帶運送)의 경우(境遇)에 이것을 준용(準用)함. 단(但) 여객규칙(旅客規則) 제83조(條)에 규정(規定)한 취급방법(取扱方法)은 항로(航路)에 있어서는 그 정(定)한 바에 의(依)함.

제3장(章) 수하물(手荷物), 소하물(小荷物) 및 여객부수소하물(旅客附隨小荷物) 운송(運送)

제21조(條) 수하물(手荷物)의 무임운송중량(無賃運送重量)은 철도(鐵道) 및 항로(航路)를 통틀어 여객규칙(旅客規則) 제150조(條)에서 정(定)한 바에 의(依)함. 단(但) 철도(鐵道)와 항로(航路)가 등급(等級)을 달리한 경우(境遇)의 무임운송중량(無賃運送重量)은 철도(鐵道)·항로(航路) 각각(各各) 별도(別途)로 그 정(定)한 바에 의(依)하여 계산(計算)함.

제22조(條) 수하물운임(手荷物運賃), 소하물운임(小荷物運賃) 및 여객부수소하물운임(旅客附隨小荷物運賃)은 별단(別段)의 정(定)한 것을 제(除)하고 철도(鐵道) 상호(相互) 간(間)에 있어서는 철도영업(鐵道營業) 킬로미터 수(粁程: km數) 통산(通算)하여 국(局)이 정(定)한 바의 임률(賃率)에 의(依)하여 이것을 산출(算出)함으로 하고, 철도(鐵道)·항로(航路) 상호(相互) 간(間)에 있어서는 철도(鐵道) 및 항로(航路)에 있어서 소정액(所定額)을 병산(倂算)함으로 함.

제23조(條) 여객규칙(旅客規則) 제65조(條)에 규정(規定)한 이민(移民)의 수하물(手荷物)에 대하여는 철도(鐵道) 상호(相互) 간(間)에 한(限)하여 국(局)과 동일(同一)의 취급(取扱)을 함.

제24조(條) 총포(銃砲), 양식(糧食), 피복(被服), 군용 기구[陣具], 농기구[工鍬], 병기구(兵器具), 천막(天幕) 등의 군수품(軍需品)을 공용(公用)을 위하여 소하물(小荷物)로서 운송(運送)하는 경우(境遇)에 있어서 운임(運賃)은 제22조(條)에 의(依)한 운임(運賃)에서 5할(割)을 저감(低減)함. 단(但) 항로(航路)의 운임(運賃)에 관(關)하여는 이 한(限)에 부재(不在)함.

전항(前項)에 의(依)하여 운임(運賃)의 할인(割引)을 받고자 하는 자(者)는 공용(公用)인 것의 증명서(證明書)를 제출(提出)함으로 함.

제25조(條) 소하물급(小荷物扱) 신문지(新聞紙)·잡지(雜誌)의 운임(運賃)은 아래[左]와 같이 함.

2선연대(二線連帶)의 경우 1킬로미터(粁:kg)당(當) 1전(錢)6리(厘) 최저운임(最低運賃) 3전(錢)

3선연대(三線連帶)의 경우 1킬로미터(粁:kg)당(當) 2전(錢)5리(厘) 최저운임(最低運賃) 4전(錢)

제26조(條) 여객부수(旅客附隨)의 자용(自用) 자전거(自轉車)의 운임(運賃)은 철도(鐵道) 상호(相互) 간(間)에 한(限)하여 국(局)이 정(定)한 바와 같이 함.

제27조(條) 여객(旅客) 또는 하송인(荷送人)은 수하물(手荷物), 소하물(小荷物) 또는 여객부수소하물(旅客附隨小荷物) 탁송(託送) 시(時) 국(局)이 정(定)한 바의 요상액(要償額)[1] 표시료(表示料)를 지불(支拂)하고 요상액(要償額)을 표시(表示)함을 득(得)함. 단(但) 항로(航路)와의 연대운송(連帶運送)의 경우(境遇)는 이 한(限)에 부재(不在)함.

전항(前項)의 규정(規定)에 의(依)한 표시액(表示額)이 탁송(託送) 수하물(手荷物), 소하물(小荷物) 또는 여객부수소하물(旅客附隨小荷物)의 인도기간(引渡期間)이 만료(滿了)한 날[日]의 도착지(到著地)에서는 가격(價格) 및 인도(引渡)하지 아니한 경우(境遇)에서 여객(旅客) 또는 하송인(荷送人)이 받아야 할 기타(其他) 손해(損害)의 합계액(合計額)을 초과(超過)할 시(時)는 그 초과부분(超過部分)에 대하여는 그 표시(表示)는 이것을 무효(無效)로 함.

전항(前項)의 규정(規定)에 의(依)한 초과부분(超過部分)에 대한 표시료(表示料)에 대하여는 이것 환급(還給)을 하지 아니함.

제28조(條) 철도(鐵道) 상호(相互) 간(間)에 있어서 수하물(手荷物), 소하물(小荷物) 및 여객부수소하물(旅客附隨小荷物)의 인도기간(引渡期間)은 아래[左]의 각(各) 호(號)의 기간(期間)을 합산(合算)함. 단(但) 수송기간(輸送期間)은 소관(所管)을 달리하는 철도(鐵道)와 접속(接續)할 때마다 각각(各各) 별도(別途)로 이것을 계산(計算)하여 병산(併算)함.

1. 발송기간(發送期間) 운송(運送)을 위하여 수취(受取)한 날[日]
2. 수송기간(輸送期間) 400킬로미터(粁: km)까지 마다 1일(日)
3. 배달기간(配達期間) 1일(日)

도중(途中) 하차(下車)해야 할 수하물(手荷物)의 인도기간(引渡期間)은 도중(島中) 하차를 할 때마다 중단(中斷)하여 계산(計算)함.

불가항력(不可抗力) 기타(其他) 철도(鐵道)의 책임(責任)으로 귀속(歸屬)되지 아니한 사유(事由)로 인(因)하여 지연(遲延)한 일수(日數)는 이것을 제1항(項)의 인도기간(引渡期間)에 가산(加算)함.

제1항(項)의 인도기간(引渡期間) 경과(經過) 후(後) 하물(荷物)의 인도(引渡)가 있을 경우에 있어서는 철도(鐵道)가 그 인도(引渡)의 준비(準備)를 하고 또 도달(到達)의 통지(通知)를 발(發)해야 하는 것에 대하여 그 통지(通知)를 발(發)한 때는 그 후(後)의 기간(期間)에 대하여는 철도(鐵道)의 책임(責任)으로 귀속(歸屬)할만한 사유(事由)가 있는 경우(境遇)를

1) 역자: 탁송(託送) 전(前) 화물(貨物)·소화물(小貨物)에 대하여 사고(事故) 발생 시(時) 배상(賠償)에 참고하기 위하여 화물 또는 소화물의 가치를 측정하여 물표 또는 탁송서(託送書)에 표시하는 금액을 말하며, 현재는 요상액 표시를 하지 않는다.

제(除)한 외(外)의 인도기간(引渡期間)은 이것을 초과(超過)하지 아니함으로 함.

제29조(條) 소하물(小荷物)에 대하여는 별단(別段)의 정(定)한 것을 제(除)하고 운임요금(運賃料金)의 착불(著拂) 및 대금상환(代金相換)의 취급(取扱)을 하지 아니함.

제30조(條) 철도(鐵道)와 항로(航路)와의 연대운송(連帶運送)에 관계(關係)된 소하물(小荷物)에 대하여 하송인(荷送人)의 청구(請求)가 있을 때는 철도(鐵道), 항로(航路)를 통틀어 화물상환증(貨物相換證)을 발행(發行)함. 이 경우(境遇)에서는 선하증권(船荷證券)의 발행(發行)을 하지 아니함.

제31조(條) 여객규칙(旅客規則) 제144조(條), 제146조(條), 제147조(條), 제147조(條)의3, 제147조(條)의5, 제147조(條)의6, 제147조(條)의8에서 제151조(條)까지, 제154조(條)부터 제156조(條)까지, 제158조(條)부터 제165조(條)까지, 제170조(條), 제171조(條), 제172조(條)의2부터 제175조(條)까지, 제178조(條), 제180조(條)부터 제193조(條)까지 및 제198조(條)부터 제209조(條)까지의 규정(規定)은 연대운송(連帶運送)의 경우(境遇)에 이것을 준용(準用)함.